

2016년 8월 1일 공영주차장 금지조정 안내

□ 시행시기 : 2016. 8. 1.

대상 주차장명	현행금지	조정금지	조정요금	특이사항
중동역	2	1	10분당 500원 1일 15,000원	
장산역 1	2	1	10분당 500원 1일 15,000원	
장산역 2	2	1	10분당 500원 1일 15,000원	
사상역 광장	2	1	10분당 500원	1일 주차 및 월주차 없음
하단역	2	1	10분당 500원 1일 15,000원	
요트경기장	4	토,일,공휴일 : 4→2 평일 : 4→3	토,일,공휴일 : 10분당 300원 평일 : 10분당 200원	
미포공영	3	2	10분당 300원 1일 8,000원	
서부터미널	2	1	10분당 500원	1일 주차 및 월주차 없음

□ 근거 :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 별표 1

□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

제3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(이하 “공영주차장”이라 한다)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.<개정 2010. 3. 3>

[별표 1]<개정 2008. 7. 30, 2008. 12. 31, 2009. 2. 4, 2010. 3. 3, 2015. 7. 15>

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(제3조제1항 관련)

급지	시간제 주차(10분마다)	1 일 주차	월 주차	
			주 간	야 간
1급지	500원	15,000원	160,000원	80,000원
2급지	300원	8,000원	90,000원	70,000원
3급지	200원	4,700원	환 승: 35,000원 비환승: 50,000원	환 승: 25,000원 비환승: 40,000원
4급지	100원	2,400원	30,000원	22,000원

- ※ 1일 주차 및 월 주차는 노외주차장과 주간에 2급지부터 4급지까지의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<신설 2009. 2. 4>
- ※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주·야간 모두 이용할 경우에는 월 주차는 4만원으로 한다.
- ※ 1일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장에서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을 받는다.

비 고

1. 급지구분<개정 2015. 7. 15>

가. 1급지<개정 2015. 7. 15>

도심지역(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구역 중 상업지역, 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,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) 중 아래 동에 위치한 주차장

(1) 중 구: 중앙동, 동광동, 부평동, 광복동, 남포동

(2) 동 구: 초량1·2·3동, 범일2동

(3) 부산진구: 부전1·2동, 범천1동

(4) 연 제 구: 연산4·5동

(5) 동 래 구: 온천1동

(6) 북 구: 구포1동, 덕천2동<신설 2015. 7. 15>

(7) 해운대구: 우1·2동, 중1동, 좌1·2동<신설 2015. 7. 15>

(8) 사 하 구: 하단1·2동<신설 2015. 7. 15>

(9) 수 영 구: 광안2동<신설 2015. 7. 15>

(10) 사 상 구: 쾌법동<신설 2015. 7. 15>

나. 2급지

도심지역 중 아래 지역을 제외한 주차장

(1) 1급지

(2) 서구 감천항 배후지역 및 북구·해운대구·사하구·금정구·연제구·사상구 관
내 공업지역

다. 3급지: 역세권주차장(1급지·2급지에 설치된 역세권주차장을 제외한다)

라. 4급지: 1급지·2급지·3급지 이외의 노상 및 노외주차장

마.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성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
될 경우 급지를 조정·적용할 수 있다.

2. 주차장 운영에 따른 적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주간: 08:00 ~ 20:00

나. 야간: 20:00 ~ 다음날 08:00

다. 1일 주차: 입차시간부터 24시간 이내

3. 위 요금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승차정원이 15명 미만 승합자동차, 2.5톤
이하 화물자동차도 같이 적용하며 크기가 다른 경우 주차구획선 점유면수를 기준으
로 요금을 계산한다.

4. 삭제<2009. 2. 4>